

# 싱가포르(Singapore)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3년(적립금고), 1955년 시행
- 현행법 : 2001년(적립금고), 2015년(소득보조제도)

## 2 제도형태

- 적립금고제도 및 사회부조제도
  - ※ 중앙적립금고(CPF, Central Provident Fund)에서 4종류의 개인계좌를 각 구성원에게 제공함 : 주택구입, 승인된 투자, 생명 및 저당보험, 교육 재원을 위한 보통계좌(Ordinary Account, OA); 우선적으로 퇴직(퇴직과 관련된 금융상품 투자 가능)을 위한 특별계좌(Special Account, SA); 특정 입원치료 및 의료비용 재원을 위한 의료저축계좌(MediSave Account, MA)(질병 및 출산 참고); 퇴직 시의 월 급여를 재원하기 위해 55세에 설립되는 퇴직계좌(Retirement Account, RA)

## 3 적용대상

- 적립금고
  - 대부분의 공공 부문 근로자를 포함하는 근로자; 연간 순이익이 S\$6,000(의료저축계좌만)를 초과하는 자영자
  - 임의적용 : 의무대상이 아닌 자
  - 특별제도 : 행정사무직 직원을 포함한 특정범주의 공공부문 근로자
- 사회부조(노령보조제도) : 노령 빈곤층 싱가포르 국민

## 4 재원조달

- 가입자
  - 적립금고
    - 월소득이 S\$750 이상인 경우 56세 미만일 시 월 소득의 20%, 56~60세일 시 13%, 61~65세일 시 7.5%, 또는 66세 이상일 시 5% 납부. 월 소득이 S\$500 이상 S\$750 미만일 경우 연령과 소득에 근거하여 월정액을 납부함. 보험료율은 연금수급자의 경우 감소됨
    - 피부양자 보호 제도(Dependants' Protection Scheme, DPS) 보장 재원으로 연령별 추가 월 납부 보험료 있음. 보험료는 S\$36(35세 미만일 시)부터 S\$260(55~59세일 시)사이이며 보통계좌 또는 특별계좌 계좌 잔고로 납부 가능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S\$500
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S\$6,000
- 월소득이 S\$750 이상인 경우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가입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총액의 1~23%가 보통계좌로, 1~11.5%가 특별계좌로, 그리고 8~10.5%가 의료저축계좌로 할당됨. 의료저축계좌는 병원치료비용 및 의료비를 보장함(질병 및 출산 참고). 보통계좌 및 특별계좌 내 금액은 55세에 퇴직계좌로 특정 금액까지 이전됨
- 가입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연간 총액은 최대 S\$37,740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자영자

- 적립금고
  - 나이, 소득, 자영자가 연금가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간 교역 순이익의 4~10.5%가 의료저축계좌에만 지급됨(노령 가입자, 연 교역 순소득이 더 큰 사람, 연금 비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부금액이 더 큼)
  - 의료저축계좌로의 연 의무 보험료 납부최고금액은 나이, 소득, 자영자가 연금 가입자 인지 아닌지에 따라 S\$5,760~7,560
  - 자영자는 보통계좌 및 특별계좌로 임의적으로 보험료 납부 가능
  - 피부양자 보호 제도(Dependants' Protection Scheme, DPS) 보장 재원으로 연령별 추가 월 납부 보험료 존재. 보험료는 S\$36(35세 미만일 시)부터 S\$260(55~59세일 시) 사이이며 보통계좌 또는 특별계좌 계좌 잔고로 납부 가능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적립금고
  -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가 S\$50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65세 미만일 시 월급여의 17%, 56~60세일 시 13%, 61~65세일 시 9%, 66세 이상일 시 13%. 보험료율은 연금 수급자의 경우 감소됨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S\$50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S\$6,000
  - 월소득이 S\$750 이상인 경우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가입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총액의 1~23%가 보통계좌로, 1~11.5%가 특별계좌로, 그리고 8~10.5%가 의료저축계좌로 할당됨. 보통계좌 및 특별계좌 내 금액은 55세에 퇴직계좌로 특정 금액까지 이전됨
  - 가입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연간 총액은 최대 S\$37,740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적립금고
  - 대부분의 공공 부문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  - 근로복지 소득지원(WIS) 정책에 의거(가족 수당 참고), 가입자의 나이와 소득에 근거 하여 월 순소득이 최대 S\$2,000인(지난 12개월 동안 월 평균 순소득이 S\$2,000인 근로자) 35세 이상 저소득 근로자(장애 보유 시 13세 이상)의 중앙적립금고 계좌로 1년에 최대

S\$3,600의 60%까지; 저소득 자영자의 의료저축계좌로 가입자 나이와 소득에 근거하여 1년에 최대 S\$2,400의 90%까지 보조하며; 가입자의 중앙적립금고 계좌에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추가 지불함
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##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### ○ 노령급여

- 노령급여(적립금고)

- 보통계좌

- . 특정 조건 하에 55세에 기금은 인출될 수 있음; 기금 가입자가 심각한 의학적 질환으로 판정되거나 영구적으로 싱가포르 및 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주한다면 연령무관 인출 가능
- . 부분인출급여(drawdown): 주택이나 보험(중앙적립금고에서 운영하는 생애보험이나 저당 감액보험) 구입 시, 가입자나 배우자 또는 그 자녀의 승인된 현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(Tertiary Education)을 위하여 55세 이전에 인출 가능. 승인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S\$20,000 이상 인출가능

- 특별계좌

- . 특정 조건 하에 55세에 기금은 인출될 수 있음; 기금 가입자가 심각한 의학적 질환이 있거나 영구적으로 싱가포르 및 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주한다면 연령무관 인출가능
- . 조기인출 : 승인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S\$40,000 이상인출가능

- 의료저축계좌

- . 병원치료, 특정 항목 외래진료 비용 및 의료보험 보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부분 인출가능. 질병 및 출산 참고

- 퇴직계좌

- . 특정 조건 하에 55세에 기금은 인출될 수 있거나, 기금 가입자가 심각한 의학적 질환을 가졌거나 영구적으로 싱가포르 및 서 말레이시아를 이주한다면 연령무관 인출가능
- . 65세에 퇴직계좌 잔금이 S\$60,000 이상인 경우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중앙적립금고의(중앙적립금고 노령을 위한 평생소득 CPF LIFE) 생명연금보험제도에 가입됨(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가진 기금 가입자에게는 신청이 임의적임)

- 노령급여(노령보조제도, 사회부조, 소득조사)

- 55세까지 중앙적립금고 납부 총액이 S\$70,000 이하며 1인당 가계 월 소득이 S\$1,100 이하인 65세 이상 가입자. S\$ 45세에서 54세 사이 얻은 연 평균 교육 순소득이 S\$22,800이하인 자영자. 방이 7개 미만인 공영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5개 이상의 방이 있는 재산을 소유하거나, 소유하는 사람과 혼인관계인 경우 불가

### ○ 장애급여

- 장애급여(피부양자 보호제도, 적립금고) : 21~60세이며 심각한 의학적 질환으로 진단

- 되어, 영구적으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
- 장애는 어떠한 정부 병원의 등록된 의사 또는 중앙적립금고의 의사 위원회에 의해 판정됨
- 기금 가입자는 탈퇴할 수 있음

○ 유족급여(적립금고) :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지명 유족에게 지급됨

## 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• 노령급여(적립금고)

- 보통 및 특별계좌 : 퇴직계좌 최소필요잔액을 초과하는 잔액만큼의 일시금, 또는 S\$5,000 중 더 큰 금액이 일시금 형태로 지급
- 퇴직계좌 최소필요잔액은 가입자가 55세를 도달하는 시기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: S\$80,000부터(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7월 30일 사이에 55세 도달 시) S\$171,000(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55세 도달 시)
- 이자율 : 보통계좌의 이자율은 2.5% 또는 지난 3개월 간 현지 주요 은행의 평균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로 함. 특별계좌, 의료저축계좌, 및 퇴직계좌의 이자율은 현행 최저금리인 4% 또는 10년물 싱가포르 국고채 12개월 평균 이자율 + 1%에 해당하는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로 함. 가입자 총 저축액 중 S\$60,000(보통계좌 합산 가능 최대금액은 S\$20,000)까지는 추가이율 연 1% 적용. 55세 이상 가입자는 총 저축액 중(보통계좌 합산 가능 최대금액은 S\$20,000) S\$30,000까지 추가이율 연 1% 적용. 중앙적립금고가 모든 계좌에 연 2.5%의 법정 최저이율을 보장하며 이자는 월 별로 계산되며 매년 복리로 인식됨
- 의료저축계좌 : 질병 및 출산 참고
- 퇴직계좌 : 중앙적립금고 또는 승인된 보험회사로부터 생명연금보험을 구입하기 위해 기금이 인출될 수 있음. 65세 도달 시 퇴직계좌 저축액이 S\$60,000 이상인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중앙적립금고 에서 제공되는 생명연금보험을 구매해야 함. 퇴직계좌 최소필요잔액의 절반까지 인출가능
- 퇴직계좌 최소필요잔액은 가입자가 55세를 도달하는 시기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: S\$80,000부터(2003년 7월 1일 ~2004년 7월 30일 사이에 55세 도달 시) S\$171,000(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55세 도달 시)
- 노령급여(노령지원제도, 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지급자의 거주 지역에 근거하여 분기별로 S\$300에서 S\$750 지급

○ 장애급여

- 장애급여(피부양자 보호 제도, 적립금고) : 최대 S\$5,000까지의 일시금 또는 기간 인식하여 계산된 퇴직계좌 최소필요잔액 초과액 중 더 큰 금액 지급
- 퇴직 계좌 잔액이 월 급여 형태로 추가 지급
- 최대 장애급여의 합은 S\$46,000

○ 유족급여

- 유족급여(적립금고, 모든 계좌) : 급여액은 사망자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, 생명보험 미지급금, 그리고 중앙적립금고 생명 연금 보험 제도의 사망급여임
- 가입자는 각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배분을 결정함. 유족이 없는 경우, 법령에 근거하여 유산관리국이 처리

---

## 7 관리운영기관

---

○ 노동부(Ministry of Manpower)

- <https://www.mom.gov.sg>
- 소득보장정책부를 통하여 전반적 감독

○ 중앙적립금고

- <https://www.cpf.gov.sg>
- 노.사.정 위원회와 위원장의 관리 하에 기금 관리, 제도 관리, 보험료징수, 급여지급 등 제도 운영

<2018년 ISSA 자료>